

01 열려라 중국

- 중국 분쟁해결방법에 있어서 조정우선 원칙 의견 발표 (김영규 변호사)

05 Vietnam LIVE!

- 베트남에서의 흡수합병(Mergers), 그 오랜 기다림 (한승혁 호주변호사)

07 생생 러시아

- 우크라이나 회사 관련 법제 II (채희석변호사)

11 주목! 이 판례

- 근로기간의 산정이 어려운 사정이 없는 경우 포괄임금 계약의 성립 가부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 6052 판결)

15 최신법령

- 동산·채권·지적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제도의 창설 등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결과의 공개사실공지 등
- 기부채납된 재산의 사용·수익허가 기간의 연장
- 기업재무안정투자회사 및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회사
의 특례사항 구체화 등

18 업무동향

- 지평지성, LIG투자증권 컨소시엄 주간의 미분양 펀드 1호 관련 업무 진행

19 지평지성 단신

- 이호원, 박동영 대표변호사, 김성수 변호사, 대한 상사중재원 중재인으로 위촉
 - 김영규 변호사, 서울대 법학연구소 학술대회 토론자로 참석
 - 금태섭 변호사, '정의란 무엇인가' 출간 기념 대담회 참석 / 서초경찰서 소속 경찰관 대상으로 인권 교육 실시
 - 임성택, 김상준, 김이태, 김태형 변호사, 김병선 국장, 사회적기업 3주년 기념 프로보노 발대식 참석
 - 김성수 변호사, '2010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전공의 연수교육'에서 강의 진행
 - 이은우 변호사, '온라인 행태 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 공청회 참석
 - 지평지성, 신영복 교수님 초청 '성찰과 희망' 강연회 개최
 - 지평지성, 청소년 중식 전달 행사 참여
- ## 25 영입인사
- 김영수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지성의 Newsletter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 지평지성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적 효력을 지닌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무법인 지평지성의 변호사 및 전문가와 상담하여 주십시오.



(열려라 중국)

중국 분쟁해결방법에 있어서 조정우선 원칙 의견 발표



김영규 변호사

지난 6월 27일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조정 우선, 조정과 재판의 결합"업무 원칙 관철에 대한 의견>(이하 '의견'이라 함)을 발표하여, 각급 법원에 "조정"을 사건 처리에 있어서 첫 번째의 절차로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지하다시피 중국에 있어서 분쟁해결방법에는 소송 및 중재와 더불어 조정이 있는데, 조정에는 북경조정센터(Beijing Conciliation Centre)에서의 조정과 중국국제경제 무역중재위원회(CIETAC)의 중재절차 중 조정, 중국법원에 의한 조정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북경조정센터(Beijing Conciliation Centre)는 1987년 국제무역촉진위원회(China Council for the Promotion of International Trade: CCPIT)내에 설치된 것으로서, 그 조정의 특징으로는 첫째, 당사자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둘째, 당사자가 각각 선정된 2명의 조정위원회로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며, 셋째, 당사자 일방이 조정인에게 제공한 정보는 제공자가 비밀을 요청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방 당사자에게 제공할 수 있고, 넷째, 조정에 의한 우호적 합의서는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하며, 다섯째, 조정이 실패한 경우 의견, 제안 및 시인 내용, 조정인의 제안에 대한 수락한 내용 등은 향후 중재 또는 소송과정에서 보충자료로 사용될 수 없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CIETAC)의 중재절차 중 조정의 특징으로는, 첫째, 중재판정부가 당사자와 협의하거나, 둘째 중재판정부가 쌍방 당사자와 개별적으로 협의하거나, 셋째, 당사자들이 직접 협의하는 방식을 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원에서의 조정은 담당 판사가 법원 재판 중에 조정으로써 해결하는 방식인데, 법원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를 작성하여 궁극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이라 하겠습니다.

위 분쟁 해결 방법인 소송이나, 중재, 조정 중에서 소액 또는 비금전적 분쟁이나, 엄격한 법적 권리 의무보다는 사업상 이해관계에 바탕을 둔 분쟁 또는 사업관계의 지속성을 원할 경우의 해결방법으로는 조정이 매우 유용할 수 있으며, 특히 당사자 간 감정의 종국적 해결에도 매우 유용하여 조정을 많이 활용하는 방안이 실무적으로 논의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법원에서의 조정 방안은 판결로 인하여서는 분쟁 해결의 종국성이 해소되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당사자들 간의 감정만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판결로 인한 분쟁해결보다는 그 유용성에 있어서 매우 각광받는 분쟁해결 방법이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최근 최고인민법원에서 재판에 앞서 조정을 우선시 하도록 하는 위 <의견>을 발표함으로써, 앞으로 조정의 많은 활용이 기대된다 하겠습니다.

위 <의견>의 내용을 살펴보면, <의견>은 총 4부분, 29개 조항으로 나누어져 있고, 민사안건 및 형사안건, 행정안건, 집행안건 등 각 안건의 조정사항을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혼인이나 가정 분쟁, 노동계약 분쟁, 교통사고 및 산업재해 사고 등의 민사안건에는 개정 전에 조정을 하도록 하는 방식을 채택하며, 아울러 경미한 형사안건 역시 법원에 고소 후 당사자 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즉, 민사안건은 조정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인데, 가정이나 혼

인분쟁, 노동계약 분쟁, 교통사고 및 산업 재해 사고로 발생한 권리의무관계 등 비교적 확실한 손해배상 분쟁, 대지 및 이웃관계 분쟁, 동업관계 분쟁, 소송가액이 비교적 적은 분쟁 등은 법정 심문에 앞서 조정이 먼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의 민사안건에 대한 법정 심문은 일반적으로 증거제시, 대질 등 정상적인 심문 절차를 거친 후에 조정이 가능한 안건에 대하여, 비로소 법관은 조정을 진행하곤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실질적으로 제일 좋은 조정 시기를 놓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심문 당시 쌍방 당사자의 변론이 격렬해 짐으로 인하여 심문 후의 조정이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면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의견>에는 이러한 조정 절차를 앞당겨, 법관은 사전에 쌍방의 의도를 확인한 후 쌍방의 동의 하에 조정을 진행함으로써, 조정 분위기 조성에도 어울리게 함과 아울러, 많은 사법 자원도 절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사건에서도 조정을 우선시하도록 규정한 것인데, 구체적인 행정행위의 위법 혹은 합법적이라도 합리성을 구비하지 않은 행정안건에 대하여, 조정을 통하여 최대한 행정기관이 소송 중에 자체적으로 행정위반 행위를 취소하거나,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무효화 처리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행정소송 중의 위법행위는 자체적으로 취소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행정행위의 위법 혹은 합법적이라도 합리성을 구비하지 않은 행정안건에 대하여는, 조정을 통해 최대한 행정기관이 소송 중에 자체적으로 행정위반 행위를 취소하거나 혹은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무효화 처리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행정안건 중, 법원 심판에서 각 행정기관의 협력이 서로 되지 않는 상황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 이 <의견>의 시행으로 인하여 법원은 행정안건 심사과정에서 더 좋은 집행 방법을 강구할 것이고, 행정안건 심의의 투명도와 공정성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의견의 시행으로 인하여 기층법원이 맹목적으로 높은 조정률을 추구하거나 법원이 강제적으로 무리하게 당사자 간의 조정을 진행하는 상황을 예상할 수 있

는데, 수많은 민사 및 형사, 행정 사건에 대하여 무조건적인 <의견>시행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 규정이 뒤따라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의견>의 시행으로 인하여, 많은 외국 기업들 특히 한국 기업들이나 한국인들이 중국에 진출하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분쟁에 대하여, 앞으로 소송이나 중재보다는 조정이라는 보다 효율적인 방법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보다 더 많은 외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진취적인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이번 최고인민법원의 <의견> 발표는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의견> 발표 후 세부적인 규정의 보완, 제정이 예상되고 있는 바, 앞으로 조정의 활성화 방안 등을 통하여 보다 진일보한 분쟁해결이 기대된다 하겠습니다. JS-Horizon

(Vietnam LIVE!)

베트남에서의 흡수합병(Mergers), 그 오랜 기다림



한승혁 호주변호사

지난 2009년 여름 이맘때쯤, 두 외국인투자법인의 흡수합병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그렇듯 베트남에서 법리에 어긋나지 않는 최초의 사례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수많은 관련 기관 담당자들을 설득하는 작업과 인내를 필요로 하였습니다.

베트남 법령을 통틀어 흡수합병 관련 법 조항은 기업법 153조가 유일합니다. 기업법 153조 1항은 동일한 형태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회사(merging companies)가 회사의 모든 자산, 권리, 의무와 이권을 다른 회사(merged company)에 양도함으로써 흡수합병 될 수 있으며, 동시에 merging companies는 소멸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해하는 기업합병과 그 궤를 같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업합병은 둘 이상의 회사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하나의 회사로 합치는 것을 의미하며 합병에 따른 소멸회사의 권리 및 의무가 존속회사에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회사 간의 행위인 것입니다.[1]

그러나 3개월 이상을 끌어온 합병에 관한 서류심사 결과, 베트남 관련 당국의 법 해석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흡수합병의 경우에도 기존의 회사가 소멸하는 이상 청산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입니다. 합병신청서류 준비기간과 심사기간을 합쳐 약 5개월을 무위로 돌려놓은 것이었습니다.

2009년 말까지 합병작업을 마무리 짓고 2010년부터 제2의 도약을 준비하던 고객사의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런 고객사에게 중앙정부의 최종 유권해석을 받을 때까지 더 기다려 달라고 설득할 용기를 내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용기는 고객사가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지방정부의 흡수합병에 대한 유권해석은 옳지 않다고 판단되며, 사업계획에 다소 차질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법과 이치에 맞는 최종 유권해석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고객사의 용단이 없었다면 베트남에서의 흡수합병에 대한 그릇된 선례만 남기는 우를 범하게 됐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후 3개월의 시간을 기다려야 했지만, 중앙정부의 최종 유권해석은 이치에 맞는 법률의 해석이 이루어짐으로써 따로 청산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흡수합병을 이룰 수 있게 되는 최초의 사례를 남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도 두 회사 간의 자본금 문제, 매각대금의 지불에 대한 조세 문제 등에 대한 사전 확인 작업을 진행하느라 3개월여의 시간이 더 소요되어서야 흡수합병의 터널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10년 7월, 관련 당국으로부터 존속회사의 투자허가서 개정 초안을 함께 검토하자는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베트남은 도이모이 정책발표 후 문호를 개방하고 투자유치를 위해서 법률을 정비하는 등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아직도 많은 부분에 있어 부족하고 미숙한 점들이 산재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미비점들은 경제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베트남 국민들의 염원이 있는 한 지속적으로 개선될 것입니다.

따라서 좀 더 느긋한 마음으로 기다릴 줄 아는 자세도 함께 견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기 고객사가 40년 동안 한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우뚝 성장한 데에는 그러한 기다림의 미학이 원동력이 되지 않았을까요?

[각주]

1. 제해진, M&A 이론과 실제(제1장 M&A의 개요), 2004, 25페이지

(생생 러시아)

우크라이나 회사 관련 법제 Ⅱ



채희석 변호사

■ [관련링크 : 우크라이나 회사 관련 법제 \(지평지성 뉴스레터 2010. 6월호\)](#)

지난 회에 이어서 우크라이나 주식회사 관련 주요제도를 살펴보기로 합니다.

(1) 일반 사항

주식회사는 다시 공개형 주식회사(public JSC)와 폐쇄형 주식회사(private JSC)로 구분됩니다. 폐쇄형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의 수가 100인 미만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공개형 주식회사와 차이가 있습니다.

공개형 주식회사는 공모방식 또는 사모방식을 통하여 신주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개형 주식회사는 1개 이상의 우크라이나 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여 이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반면 폐쇄형 주식회사는 사모방식을 통해서만 신주를 발행할 수 있고, 만약 폐쇄형 주식회사의 주주총회가 공모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할 것을 결의하는 경우 회사의 형태를 공개형 주식회사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우크라이나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공개형 주식회사의 주식은 반드시 당해 증권거래소를 통해서만 매매하여야 합니다. 반면 폐쇄형 주식회사의 주식에 대해서는 이러한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식회사의 설립 또는 운영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한이 적용됩니다.

1. 주식회사 형태의 1인회사(wholly-owned subsidiary)는 다른 1인회사(외국회사 포함)에 의하여 설립될 수 없습니다.
2. 2009년 4월 30일부터 동일인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2 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주식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3. 외국회사가 지분 100%를 보유하는 주식회사는 우크라이나에 소재하는 토지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
4. 주식회사의 자본금은 최저임금의 1,250배 이상이어야 합니다.

공개형과 폐쇄형을 막론하고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증권위원회(the Ukrainian State Commission on Securities and the Stock Market)에 등록해야 합니다. 또한 신주를 공모방식으로 발행하기 위해서는 증권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한편, 이를 공개하여야 합니다.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등록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신주발행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2) 주주총회

주식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주주총회입니다.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에 대해서는 집중투표제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1주식 1의결권주의」가 적용됩니다. 주주총회의 의사정족수는 발행주식총수 중 60% 이상의 참석입니다. 주주총회의 소집통지는 소집일의 30일 이전까지 이루어져야 하고, 주주가 1,000인 이상인 주식회사의 경우 소집통지와 별도로 주주총회의 소집을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1인회사의 경우 주주총회에 관한 규정이 배제되고, 그 대신 1인주주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권한이 인정됩니다.

주식회사법은 초과 과반수에 의한 결의방식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의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3/4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1. 정관의 개정
2. 자기주식의 소각
3. 주식회사 형태의 변경
4. 신주의 발행
5. 증자 및 감자
6. 회사의 해산 및 분할

다만 폐쇄형 주식회사의 경우 정관에 규정을 두어 위와 같은 사항 이외에 대해서도 초과 과반수 혹은 만장일치에 의한 결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와 같은 사항을 제외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결의는 단순 과반수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나아가 주식회사법은 감독위원회 및 감사위원회의 위원 선임과 관련하여 집중투표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중투표제는 주식회사의 형태나 주주의 수에 따라 필수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3) 감독위원회

주주가 10인 이상인 주식회사의 경우 반드시 감독위원회(supervisory council)를 두어야 합니다. 감독위원회는 주주총회 사이에 주주의 이익을 대변하여 주식회사의 경영기구를 감독하는 권한을 가집니다. 감독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특별한 자격요건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주주가 아니더라도 감독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영기구나 감사위원회의 위원은 감독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주식회사법은 감독위원회의 배타적인 권한에 대하여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독위원회는 하부기관으로 별개의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고, 회사와 주주 간의 관계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회사 서기(corporate secretary)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4) 경영기구

주식회사의 일상업무에 대한 권한을 가지는 경영기구는 경영위원회(집단 경영기구) 혹은 이사(단독 경영기구)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경영기구는 일반적으로 감독위원회와 주주총회에 대하여 보고의무를 부담합니다.

(5) 감사위원회

주주가 100인 이하인 주식회사의 경우 반드시 감사인 혹은 감사위원회를 두어야 하고, 주주가 100인 이상인 주식회사의 경우 반드시 감사위원회를 두어야 합니다. 감사위원회는 주식회사의 특별 회계·업무감사나 정기 회계·업무감사를 위하여 선임될 수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위원의 자격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이 없어 주주가 아니더라도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서기를 비롯하여 주식회사의 여타 기관에 속해있는 자는 감사인 혹은 감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6) 기타

주식회사법의 개정에 따라 특정 거래에 관계되는 자산의 시장가치가 회사의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일부 거래를 위해서는 감독위원회 혹은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주식회사가 특수관계인과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역시 감독위원회 혹은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나아가 일정한 사항의 경우 주주총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한편 보고의무와 관련하여 주식회사는 폐쇄형과 공개형을 막론하고 정기공시의무와 주요경영사항 공시의무를 부담합니다. 또한 지분취득과 관련하여 주식회사는 아래와 같은 의무를 부담합니다.

1. 주식회사의 지분을 10% 이상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그러한 의사를 회사에 서면통지하여야 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합니다.
2. 주식회사의 지분을 50% 이상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나머지 주주에 대해서도 시장가치 이상으로 보유주식을 매도할 것을 청약하여야 하고, 이를 증권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주목! 이 판례)

근로기간의 산정이 어려운 사정이 없는 경우 포괄임금계약의 효력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1. 들어가며

포괄임금제는 대법원(1974. 5. 28. 선고 73다1258 판결)이 "통상임금과 이에 가산할 각종 수당의 산출이 사실상 불가능할 경우, 제수당을 미리 합산한 일정급여를 월급여로 지급하는 것도 허용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한 이래 판례를 통하여 인정되어 온 개념입니다(하갑래, "포괄임금제의 내용과 한계", 노동법학 제29호, 2009년).

2. 대상판결의 의의

포괄임금제에 대한 대법원 판례는 외견상으로는 비교적 일관된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대법원은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근로자의 승낙하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시간외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 할 것이다" 라고 판시해왔습니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5다4056 판결,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다38995 판결 등).

그런데 실제 근로시간을 산출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포괄임금에 관한 약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근로시간을 산출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로서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수당액이 법정 제수당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포괄임금에 관한 약정을 유효하다고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대상판결은 (i) 근로기간의 산정이 어렵지 않은 경우에는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되고, (ii) 포괄임금제 방식에 의해 지급하기로 약정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부분의 포괄임금약정은 효력이 없고, 사용자는 그 미달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대상판결의 검토

가. 사실관계

1) 원고들은 해군복지근무지원단의 체력단련장 내(內) 식당(그늘집)에서 근무하는 근무원(해군 근무원 편성표에 따라 민간인 신분으로 정식 고용된 자들임)들입니다. 근무원에 대한 각종 제수당은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르면 모든 근무원들을 대상으로 실제 근로한 연장근무시간을 산정하지 않고 매년 결정된 등급을 기준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정액을 지급하는 한편, 특별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들에게 특별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해군복지근무지원단의 봉사료지급지침에 따르면, 체력단련장 내 운동시설이나 식당을 이용하는 고객들로부터 받은 봉사료 일부를 그늘집에서 근무하는 근무원들에게 균등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 봉사료는 2004년 5월 1일자로 지급이 중단되었습니다.

나.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피고가 지급한 시간외근로수당이라는 금원이 원고들이 실제로 연장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제55조에 기하여 계산한 금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그늘집 근무원들에게 시간외근로수당을 "시간외근무수당", "특별수당" 및 "봉사료"라는 명목으로 포괄하여 지급하였으므로 또다시 시간외근로수당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고들의 근로형태는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로서,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제수당을 정액으로 받아온 사실을 볼 때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어 그러나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을 때에 비로소 유효하다 할 것인데(대법원 1997. 4. 25. 선고 95다4056 판결 등),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는 것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봉사료 지급이 중단된 2004년 5월 1일 후부터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시간외근로수당이 근로기준법에 의한 산정방식보다 적다는 것을 이유로 그때부터의 포괄임금계약은 무효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포괄임금계약이 무효가 된 2004년 5월 1일부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했던 시간외근로수당에서 포괄임금계약에 따라 실제 지급한 금액의 차액만큼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라. 대상판결의 판단

대상판결은 근로기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근로기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포괄임금제 방식의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을 판결이유에서 명시적으로 적시한 것입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15조가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면서(근로기준법의 강행성), 그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근로기준법의 보충성)을 근거로 원심이 근로기준법상에 따른 지급분과 실제 지급분과의 차액을 지급하도록 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맺음말

그동안 여러가지의 이유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을 통해 법정제수당에 관계없이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포괄임금제가 활용되어 왔으며, '실근로시간의 측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포괄임금제를 도입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앞으로는 실근로시간의 측정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가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음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5. 다운로드 :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JIS-Horizon

(최신법령)

1. 동산·채권·지적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제도의 창설 등

: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제정(법률 제10336호, 2012. 6. 11. 시행)

1. 동산과 채권의 경우 현행법상 공시방법이 불완전하고, 지적재산권의 경우 질권설정의 방법으로만 담보로 제공할 수 있어 이를 담보로 이용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동산·채권·지적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제도를 창설하고 이를 위한 공시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중소기업자와 자영업자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동법이 제정되었습니다.
2. 동산(여러 개의 동산 또는 장래에 취득할 동산을 포함함) 또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명채권(장래발생할 채권을 포함함)을 담보로 제공하고 담보등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제3조, 제34조).
3. 피담보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한 경우에도 동산 또는 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제5조, 제37조).
4. 동산담보권의 경우 담보등기부에 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발생하고 동일한 동산에 설정된 동산담보권의 순위는 등기순위에 의하게 되며, 채권담보권의 경우에는 담보등기부에 등기를 한 때에 담보로 제공된 채권의 채무자를 제외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됩니다(제7조, 제35조).
5. 담보권자는 담보목적물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고, 피담보채권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담보목적물 전부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제8조 내지 제11조).
6. 다운로드 :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제정\(법률 제10336호, 2012. 6. 11. 시행\)](#)

2.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결과의 공개사실공지 등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제10346호, 2010. 6. 8. 시행)

1. 기부금품의 모집자나 모집종사자는 기부자에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결과가 공개되는 사실을 알리도록 하였습니다(제3조, 제10호).
2. 법 제9조 제1항 단서를 신설하여, 등록청은 모집자의 모집목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모집기간 중 1회 이상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등을 검사하도록 하였습니다(제9조 제1항 단서).
3. 법 제16조 제1항 제6호의2를 신설하고 제16조 제2항 제4호를 삭제하여, 기부금품의 사용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공개한 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였습니다(법 제16조 제1항 제6호의2).
4. 다운로드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제10346호, 2010. 6. 8. 시행\)](#)

3. 기부채납된 재산의 사용·수익허가 기간의 연장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일부 개정(법률 제10345호, 2010. 6. 8. 시행)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부자의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여 공공시설로 활용하는 기부채납의 경우, 기부자의 무상사용수익 기간을 일정기간 인정하는데 그치고 있어 기부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충분치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법 제21조 제3항 단서를 신설하여,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을 고려하여 사용수익허가를 10년의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기부채납제도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다운로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일부 개정\(법률 제10345호, 2010. 6. 8. 시행\)](#)

4. 기업재무안정투자회사 및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회사의 특례사항 구체화 등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대통령령 제22197호, 2010. 6. 13. 시행)

1. 기업재무안정투자회사 및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회사 제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063호, 2010. 6. 13. 시행)됨에 따라 기업재무안정투자회사 및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회사 관련 특례사항을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2. 기업재무안정투자회사의 투자대상을 중소기업으로,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의 투자대상을 재무구조개선기업으로 정하고, 의무투자비율을 펀드재산의 50퍼센트 이상으로 설정하는 등 특례사항을 구체화하였습니다(제252의2 및 제300조의2 신설).
3. 부동산 펀드 등이 신규 설립 후 1개월 내에 펀드 재산의 50% 이상을 부동산 등에 투자하도록 규제하고 있었으나, 부동산 투자 등의 특성상 1개월 이내에 투자대상 물색 등 투자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그 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였습니다(제81조 제4항).
4. 금융투자업자의 신규 또는 변경인가시 금융투자업자 본인의 요건 및 대주주 요건 등이 구체화되었습니다(제16조 제8항, 제19조의2, 제21조 제6항, 제23조의2).
5. 다운로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대통령령 제22197호, 2010. 6. 13. 시행\)](#)

(업무동향)

지평지성, LIG투자증권 컨소시엄 주간의 미분양 펀드 1호 관련 업무 진행

지평지성이 LIG투자증권 컨소시엄 주간으로 추진되는 미분양 펀드 설정과 관련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2차 미분양 펀드 금융주간사로 선정된 LIG투자증권 컨소시엄은 7월 초 미분양 펀드 1호인 '유진푸른하우징사모부동산투자신탁 1호'를 출시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는 금융파트의 이형규, 길영민, 김태일, 이유경 변호사와 류용현 회계사가 담당하고 있으며, 지평지성은 지난 해 1차 미분양펀드를 성공적으로 출시하는데 자문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관련기사]

- 동아일보 - 미분양 부동산 펀드 '유진푸른하우징 1호' 내달 출시 (2010. 6. 30.)
- 매일경제 - 올해 첫 미분양 아파트 펀드 출시 (2010. 6. 29.)
- 아시아투데이 - LIG투자증권 컨소시엄, 미분양 리츠·펀드 주간사 선정 (2010. 5. 31.)

[담당변호사]



이형규 변호사



길영민 변호사



김태일 변호사



이유경 변호사



류용현 회계사

JS-Horizon

(지평지성 단신)

이호원, 박동영 대표변호사, 김성수 변호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으로 위촉



(좌 : 법무법인 지평지성
이호원 대표변호사)
(중 : 법무법인 지평지성
박동영 대표변호사)
(우 : 법무법인 지평지성
김성수 변호사)

2010. 6. 1.자로 지평지성의 이호원, 박동영 대표변호사와 김성수 변호사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인으로 위촉되었습니다.

JS-Horizon

김영규 변호사, 서울대 법학연구소 학술대회 토론자로 참석



(사진 : 법무법인 지평지성 김영규 변호사)

2010. 6. 11. ~ 12. 서울대학교 백주년 기념관 대강당에서 '한국법과 중국법의 교류'라는 주제로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학술회의가 열렸습니다. 지평지성의 김영규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석하였습니다.

[관련기사]

- 법률신문 - '한국법과 중국법의 교류' 국제학술대회 (2010. 6. 14.)

JS-Horizon

(지평지성 단신)

금태섭 변호사, '정의란 무엇인가' 출간 기념 대담회 참석



(사진 : 법무법인 지평지성 금태섭 변호사)

2010. 6. 30.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 '정의란 무엇인가' 출간 기념 대담회가 열렸습니다. 김민웅 성공회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대담회에는 지평지성의 금태섭 변호사를 비롯하여 김용철 변호사, 박경철 의사, 우석훈 경제학자가 대담자로 참석하였습니다.

[관련기사]

- 프레시안 - "화학적 거세? 법리 문제 떠나 비겁하다" (2010. 7. 5.)
- 독서신문 - 한국 사회의 '정의'를 논하다 (2010. 6. 28.)

JS-Horizon

금태섭 변호사, 서초경찰서 소속 경찰관 대상으로 인권교육 실시

2010. 6. 28. 지평지성의 금태섭 변호사가 하상구 서초경찰서장 등 서초경찰서 소속 경찰관 70여명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하였습니다.

JS-Horizon

(지평지성 단신)

임성택, 김상준, 김이태, 김태형 변호사, 김병선 국장, 사회적기업 3주년 기념 프로보노 발대식 참석



(사진 : 좌로부터
법무법인 지평지성
임성택 변호사,
김상준 변호사,
김이태 변호사,
김태형 변호사)

2010. 7. 7. 서울광장에서 열린 사회적기업 3주년 기념 프로보노 발대식에 지평지성의 임성택, 김상준, 김이태, 김태형 변호사와 김병선 국장이 참가하였습니다.

임성택 변호사는 발대식 직후 '프로보노 활동의 의의와 애로사항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개최된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간담회에 참석하였습니다.

[관련기사]

- 파이낸셜뉴스 - 고용부, 사회적기업 3주년 기념행사 개최 (2010. 7. 7.)

JS-Horizon

김성수 변호사, '2010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전공의 연수교육'에서 강의 진행



(사진 : 법무법인 지평지성 김성수 변호사)

2010. 6. 17. '2010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전공의 연수교육'에서 지평지성의 김성수 변호사가 '정신과 의료사고의 현황 및 대응'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JS-Horizon

(지평지성 단신)

이은우 변호사, '온라인 행태 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 공청회 참석



(사진 : 법무법인 지평지성 이은우 변호사)

2010. 7. 1. 지평지성 IP·IT팀의 이은우 변호사가 방송통신위원회 주관으로 개최된 '온라인 행태 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 공청회에 참석하였습니다.

행태정보 기반의 온라인 광고란 이용자의 행태정보를 수집·추적해 이용자의 관심에 맞는 개별화된 광고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러한 행태정보의 수집·추적 과정에서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해 7월 중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관련기사]

- 연합뉴스 - 1일 온라인광고 가이드라인 공청회 (2010. 6. 29.)

(지평지성 단신)

지평지성, 신영복 교수님 초청 '성찰과 희망' 강연회 개최

지평지성은 2010. 6. 17.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성공회대학교 신영복 석좌교수님을 모시고 '성찰과 희망' 강연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신영복 교수님은 이날 강의에서 '여럿이 함께 - 여럿이 함께 가면 길은 뒤에 생겨난다' 등의 직접 쓰신 글과 그리신 그림을 통해, 상호 간의 '다름'을 인정하고 '양심'과 '실천'을 강조하셨으며, 많은 갈등이 존재하는 사회에서 상호 공존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자고 하셨습니다.

신영복 교수님은 작가, 교수, 서예가로서 '강의' (돌베개, 2004.), '나무가 나무에게' (이후, 2001), '감옥으로부터의 사색' (돌베개, 1998) 등 다수의 책을 집필하신 바 있습니다.

[참고링크]

- '더불어숲' 웹사이트 <http://www.shinyoungbok.pe.kr/>



법무법인 지평지성 신영복 교수님 초청 강연
(상공회의소 중회의실, 2010. 6. 17.)

JS-Horizon

(지평지성 단신)

지평지성, 청소년 중식 전달 행사 참여

법무법인 지평지성은 토요일인 2010. 6. 26. 청소년 중식 도시락 전달 봉사활동을 다녀왔습니다.

지평지성 임직원과 서대문구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봉사단은 이날 오후 저소득 가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근 가정 21가구에 도시락을 전달하였습니다.

지평지성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공익활동을 통해 지역 공동체 발전을 위해 공헌하는 법무법인이 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관련문의]

- 서대문구 자원봉사센터 <http://vol.sdm.go.kr/vol/index.html>

[행사사진]



법무법인 지평지성, 청소년 중식 도시락 전달 봉사활동 (2010. 6. 26.)

JS-Horizon

(영입인사)



김영수 변호사

yskim37@js-
horizon.com

□ 학력사항

- 대구 경원고등학교 제10회 졸업
-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 국민대학교 법과대학원 수료 (헌법)

□ 경력사항

- 제43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33기 수료
- 아름다운재단 공감 변호사
- 국가인권위원회 다수인보호시설전문위원회 위원 역임
- 국가청소년위원회 정책자문위원 역임
- 현 법무법인 지평지성 변호사

□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2010년 7월 4일부터 소송파트에서 근무하게 된 김영수입니다.

저는 제33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에서 지난 6년간 비영리-공익활동을 중심으로 변호사업무를 해왔습니다.

업무의 전문성과 아울러 공익성과 윤리성에 있어 최고를 지향하는 법무법인 지평지성에서 여러 훌륭한 분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맡은 분야에서 고객분들의 기대에 충실하고, 빠르고 정확한 법률서비스를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JS-Horizon



지평지성
JISUNG HORIZON

<http://www.js-horizon.com>

법무법인 지평지성

주사무소

(100-743) 서울 중구 남대문로 4가 45 상공회의소빌딩 11층 Tel : 02)6200-1600 Fax : 02)6200-0800

강북 분사무소

(100-161) 서울 중구 봉래동 1가 25 HSBC빌딩 15층 Tel : 02)6200-1800 Fax : 02)6200-0830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100-743) 서울 중구 남대문로 4가 45 상공회의소빌딩 11층 Tel : 02)6200-0880 Fax : 02)6200-0804

상해 사무소

Room 2310, Shanghai Maxdo Center, No. 8 Xing Yi Road, Shanghai, China Tel : 86-21-5208-2800 Fax: 86-21-5208-2807

호치민 사무소

#2205 Saigon Trade Center, 37 Ton Duc Thang St., Dist. 1, Ho Chi Minh City, Vietnam Tel: 84-8-3910-7510 Fax: 84-8-3910-7511

하노이 사무소

Suite 1003, 10th Fl., Daeha Business Center, 360 Kim Ma St., Ba Dinh Dist., Hanoi, Vietnam Tel: 84-4-6266-1901 Fax: 84-4-6266-1903

캄보디아 사무소

SK-Shinah Office, 2F No.797, Monivong Blvd. & St. 484, Phsar Doeum Thkov, Khan Chamkarmon, Phnom Penh, Cambodia Tel : 855-23-726-897 Fax : 855-23-726-457

라오스 사무소

LLC Bldg, Nongbone Road, Saysetha District, Vientiane, Laos Tel : 856-20-301-9820 Fax : 856-21-264-344